

안건 번호	
----------	--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심의(안)

제안년월일 : 2020. 2. 3.

제 안 자 : 학 교 장

(담당자 : 교사 소인혜)

1. 제안 이유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상황별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에 대한 잠재적 사고와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학교안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안전생활을 위해 2020학년도 학교 안전교육 운영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 받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1. 추진 근거
2. 추진 방침
3. 추진 세부 계획
4. 행정 사항

붙임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심의(안) 1부. 끝.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심의(안)

춘포초등학교

1 추진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42, 2020.01.07.)

2 추진 방침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 ※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해당 학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로 구성하여야 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기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등

3 추진 계획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안)
 - 선출 및 위촉방법

- ✓ 위원장: 교감
 - ✓ 교 원: 학교장 선출 및 위촉
 - ✓ 학부모: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부모 추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위촉
- 학부모 위원: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구 분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전체 구성원	비고
인원(명)	3	2	5	

※ 전체 구성원 : 교원 + 학부모 위원수를 합친 인원을 의미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 전담기구 개최 정족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 여건에 따라 개최
- ※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참석 여부는 사안의 경중 및 특성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

4 세부 운영 계획

순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1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2020. 1. 30.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계획 수립
2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 문자 발송	2020. 1. 31.	학부모 문자 발송
3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원 위원 선출	2020. 1. 31.	학교장 추천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0. 2. 8.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심의
5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확정 및 위촉	2020. 2. 10	관련 공문 기안 및 위촉장 수여

5 행정 사항

- 각급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2020년 2월 29일까지 완료 후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 반드시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중 1/3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함